

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20. 5. .

특 허 청
(디자인심사정 책과)

법 제 처 심 사 전

1. 개정이유

화상디자인 도입 등 디자인보호법 개정(공포: '21.4.20, 시행: '21.10.21)에 따라 제도의 운영을 위하여 별표 2와 3 및 디자인등록출원 서식(별지 제3호 및 제4호)을 개정하여 화상디자인 출원 활성화 및 기업의 신기술 디자인 권리 확보에 기여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디자인의 설명란(별표 2) 및 창작내용의 요점란(별표 3) 개정

디자인의 설명란의 기재사항 및 창작내용의 요점란의 기재방법에 화상디자인 추가 등

나. 디자인등록출원 서식 개정(안 별지 제3호 및 제4호 서식)

디자인등록출원서에 【화상디자인의 용도】란을 추가하고, 화상디자인의 분류 안내와 명칭(~용 화상)에 대한 설명을 명확히 하며, 화상디자인의 도면 작성방법을 마련하려는 것임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1. 6 ~ .)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제7호부터 제12호를 제8호부터 제13호로 하며, 제8호(중전의 제7호) 중 “화상디자인”을 “물품의 부분의 화상디자인”으로 한다.

7. 화상디자인에 대한 설명: 화상디자인이 기기(器機)의 조작에 이용되거나 기능이 발휘되는 것에 관한 설명을 명확하게 기재

(예문) 이 화상디자인은 스마트 팔찌에서 투영되어 손목에 표시된 아이콘을 조작하기 위한 것이며 스마트폰에 연동되어 전화, 날씨, 카메라, 전자계산기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

(예문) 이 화상디자인은 벽면에 빛을 투사하여 시간, 날씨, 날씨, 온도 등의 정보를 표시하는 것이다.

8. 물품의 부분의 화상디자인에 대한 설명: 액정화면 등 표시부에 일시적으로 도형 등이 표시되는 물품의 부분의 화상디자인으로서 화상이 도식되는 부분만을 제출하는 경우 그에 관한 설명

(예문) 실선으로 표시된 부분이 디스플레이 패널에 나타나는 물품의 부분의 화상디자인으로서 부분디자인으로 등록받으려는 부분이며 화상이 도식되는 부분 이외의 도면은 생략하였음.

9. 열리고 닫히는 디자인 또는 펼쳐지고 접히는 등 형태가 변화하는 디자인에 대한 설명: 물품이 가지는 기능에 의하여 변화하는 디자인으로서 그 변화 전후의 상태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그에 관한 설명

(예문) 이 디자인은 자동차 뒤쪽의 스포일러 부분이 변화하는 디자인으로서 도면A 1.1부터 도면A 1.7까지는 펼쳐진 상태를 보여주는 도면이며, 도면B 1.1부터 도면B 1.7까지는 접힌 상태를 보여주는 도면임.

10. 연속적인 일련의 과정으로 형태가 변화하는 디자인에 대한 설명: 연속적인 일련의 과

정으로 형태가 변화하는 디자인으로서 그 움직이는 상태를 설명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정지 상태, 동작 상태(동작 중의 기본적 자세, 동작 내용을 나타내는 궤적 등)에 관한 설명

(예문) 이 디자인은 움직이는 "로봇완구"의 디자인으로서 도면A 1.1부터 도면A 1.7까지는 정지 상태를 나타내는 도면이며, 도면B 1.1부터 도면B 1.7까지는 움직이는 연속 동작을 나타내는 일련의 도면임.

11. 토목건축용품의 디자인에 대한 설명: 토목건축용품에 관한 디자인으로서 반복 생산성, 운반 가능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그에 관한 설명

(예문1) 이 디자인은 가옥에 관한 디자인으로서 건축설계도에 따라 부품을 미리 생산·조립하여 시공하는 공법으로 이루어짐.

(예문2) 이 디자인은 교량에 관한 디자인으로서 철근콘크리트 또는 철제로 제작·조립하여 시공하는 공법으로 이루어짐.

12. 한 쌍으로 이루어진 물품의 디자인에 대한 설명: 한 쌍으로 이루어진 물품에 관한 디자인으로서 한 짝의 형태만을 도면으로 제출하고 나머지 한 짝을 생략하여 그에 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예문) 이 디자인은 좌·우측 이어폰이 한 세트로 구성된 블루투스 이어폰의 한 쪽 이어폰을 나타낸 것으로, 다른 한 쪽 이어폰의 디자인은 이 디자인과 대칭임.

13. 의류 및 패션잡화용품의 디자인에 대한 설명: 의류 및 패션잡화용품에 관한 디자인으로서 형태를 완전하게 보여주기 위하여 마네킹 등의 보조적인 물품을 사용하는 경우 그에 관한 설명

(예문) 이 디자인은 덧신에 관한 디자인으로서 발에 썩은 형태를 완전하게 나타내기 위해 마네킹을 사용한 것으로 마네킹은 디자인을 구성하지 않는 것임.

별표 3 제4호가목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호 가목4)부터 7)까지를 가목5)부터 8)까지로 하며, 같은 호 가목5)(중전의 가목4)) 및 가목7)(중전의 가목6))중 “화상디자인”을 “물품의 부분의 화상디자인”으로 한다.

4) 화상디자인인 경우

(예문) 이 화상디자인은 지능형 자동차 헤드라이트로서 도로면에 빛을 투시하여 차량의 운행정보(속도, 주행방향 등)를 운전자에게 전달할 수 있도록 표현하는 것이 창작내용의 요점임.

5) 물품의 부분의 화상디자인인 경우

(예문) 이 **물품의 부분의 화상디자인**은 디지털 텔레비전의 UI(User Interface)로서 방송 프로그램 중 사용자가 원하는 부분만 선택해서 저장할 수 있도록 화면의 아래부분에 수평 방향의 메뉴를 위치시킨 것이 창작내용의 요점임.

6) 한 별의 물품의 디자인인 경우

(예문) 이 한 별의 오디오 세트 디자인은 기존의 오디오 세트가 가로 방향의 조합만으로 이루어져 있던 것에서 벗어나 각각의 구성물품(unit)이 정사각형 형상으로 가로 방향은 물론, 세로 방향으로도 조합할 수 있도록 한 것이 창작내용의 요점임.

7) 연속적인 일련의 과정으로 형태가 변화하는 디자인인 경우

(예문) 이 **물품의 부분의 화상디자인**은 휴대전화의 액정화면에 연속적으로 구현되는 아이콘으로서 기존의 아이콘은 단순히 커지거나 음영이 변화하는 것에 그쳤으나 이 디자인은 알파벳 ‘K’자가 사이버 공간상에서 연속하여 일정한 간격으로 도는 변화과정을 나타낸 것이 창작내용의 요점임.

8) 글자체디자인인 경우

(예문) 이 한글 글자체디자인은 짜임새 있는 자음·모음의 공간 구성과 간결한 획의 표현으로 가독성을 높여 작은 사이즈의 본문으로 사용해도 가독성이 높으며, 제목으로 사용해도 뛰어난 주목성을 가질 수 있도록 한 것이 창작내용의 요점임.

별표 3 제4호나목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호 나목4)부터 7)까지를 나목5)부터 8)까지로 하며, 같은 호 나목5)(종전의 나목4)) 및 나목7)(종전의 나목6))중 “화상디자인”을 “물품의 부분의 화상디자인”으로 한다.

4) 화상디자인인 경우

(예문) 이 **화상디자인**은 타 차량에게 방향전환 의사를 전달하기 위한 것으로서 불필요한 장식을 최대한 배제하는 등 간결하고 기하학적인 형태를 적용하여 창작한 것을 특징으로 함

5) 물품의 부분의 화상디자인인 경우

(예문) 이 물품의 부분의 화상디자인은 컴퓨터 모니터상에서 ○○○프로그램을 사용하기 위한 실행 아이콘으로서 별 막대와 전구의 형상을 모티브로 하여 독창적으로 한 것이 창작내용의 요점임.

6) 한 별의 물품의 디자인인 경우

(예문) 이 한 별의 흡연 용구 세트는 재떨이, 담뱃갑, 라이터 및 받침대가 상호 집합되어 있는 디자인으로서 하나의 거북이 형상을 표현한 것이 창작내용의 요점임.

7) 연속적인 일련의 과정으로 형태가 변화하는 디자인인 경우

(예문) 이 물품의 부분의 화상디자인은 휴대전화의 액정화면에 연속적으로 구현되는 이미지 화면으로서 화살표로 형상화된 도로와 모바일 기기로 형상화된 자동차가 어우러져 변화하는 형태를 모티브로 한 것이 창작내용의 요점임.

8) 글자체디자인인 경우

(예문) 이 한글 글자체디자인은 네모꼴을 벗어난 글자체로서 비문(碑文) 등의 형태에서 영감을 얻어 디자인한 것으로서 한국적인 곡선과 꺾임의 표현으로 남성적인 강인한 느낌이 나도록 한 것이 창작내용의 요점임.

별지 제2호서식 뒤쪽 기재방법 제12호자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자. 디자인등록출원 이후 보정 등을 위해 다시 도면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파일 형식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보정 시 제출 가능한 파일 형식]

디자인의 종류	출원 시 제출파일 형식		보정 시 제출파일 형식	허용 여부
도면	2D이미지파일 제출 (TIFF, JPEG), 3D모델링파일 제출 (3DS, DWG, DWF, IGES, 3DM), 2D이미지파일과 3D 모델링파일의 혼합 제출 (TIFF, JPEG, 3DS, DWG, DWF, IGES, 3DM)	⇒	2D이미지파일(TIFF, JPEG)	허용
			3D모델링파일(3DS, DWG, DWF, IGES, 3DM)	허용
			동영상파일(SWF, MPEG, WMV, Animated GIF, AVI)	불가
			2D이미지 파일과 3D모델링파일의 혼합(TIFF, JPEG, 3DS, DWG, DWF, IGES, 3DM)	허용
참고	2D이미지파일 제출	⇒	2D이미지파일(TIFF, JPEG)	허용

평면, 입체, 화상디자인, 물품의 부분의 화상디자인	도면	(TIFF, JPEG), 3D모델링파일 제출 (3DS, DWG, DWF, IGES, 3DM), 동영상파일 제출 (SWF, MPEG, WMV, Animated GIF, AVI), 2D이미지파일과 3D 모델링파일의 혼합 제출 (TIFF, JPEG, 3DS, DWG, DWF, IGES, 3DM), 2D이미지파일과 동영상 파일의 혼합 제출 (TIFF, JPEG, SWF, MPEG, WMV, Animated GIF, AVI), 3D모델링파일과 동영상 파일의 혼합 제출 (3DS, DWG, DWF, IGES, 3DM, SWF, MPEG, WMV, Animated GIF, AVI), 2D이미지파일, 3D모델링 파일 및 동영상파일의 혼합 제출 (TIFF, JPEG, 3DS, DWG, DWF, IGES, 3DM, SWF, MPEG, WMV, Animated GIF, AVI)			
				3D모델링파일(3DS, DWG, DWF, IGES, 3DM)	허용
				동영상파일(SWF, MPEG, WMV, Animated GIF, AVI)	허용
				2D이미지파일과 3D모델링파일의 혼합(TIFF, JPEG, 3DS, DWG, DWF, IGES, 3DM)	허용
				2D이미지파일과 동영상파일의 혼합(TIFF, JPEG, SWF, MPEG, WMV, Animated GIF, AVI)	허용
				3D모델링 파일과 동영상파일의 혼합(3DS, DWG, DWF, IGES, 3DM, SWF, MPEG, WMV, Animated GIF, AVI)	허용
				2D이미지파일, 3D모델링파일 및 동영상파일의 혼합(TIFF, JPEG, 3DS, DWG, DWF, IGES, 3DM, SWF, MPEG, WMV, Animated GIF, AVI)	허용
글자체 디자인	도면	2D이미지파일 제출 (TIFF, JPEG), 폰트파일 제출 (TTF), 2D이미지파일과 폰트파일의 혼합 제출 (TIFF, JPEG, TTF)	⇨	2D이미지 파일(TIFF, JPEG)	허용
				폰트파일(TTF)	허용
				동영상파일(SWF, MPEG, WMV, Animated GIF, AVI)	불가
				2D이미지파일과 폰트파일의 혼합(TIFF, JPEG, TTF)	허용
	참고 도면	2D이미지파일 제출 (TIFF, JPEG), 폰트파일 제출 (TTF), 동영상파일 제출 (SWF, MPEG, WMV, Animated GIF, AVI), 2D이미지파일과	⇨	2D이미지 파일(TIFF, JPEG)	허용
				폰트파일(TTF)	허용

	폰트파일의 혼합 제출 (TIFF, JPEG, TTF), 2D이미지파일과 동영상 파일의 혼합 제출 (TIFF, JPEG, SWF, MPEG, WMV, Animated GIF, AVI), 폰트파일과 동영상파일의 혼합 제출 (TTF, SWF, MPEG, WMV, Animated GIF, AVI), 2D이미지파일, 폰트 파일 및 동영상파일의 혼합 제출 (TIFF, JPEG, TTF, SWF, MPEG, WMV, Animated GIF, AVI)	동영상파일(SWF, MPEG, WMV, Animated GIF, AVI)	허용
		2D이미지파일과 폰트파일의 혼합(TIFF, JPEG, TTF)	허용
		2D이미지파일과 동영상파일의 혼합(TIFF, JPEG, SWF, MPEG, WMV, Animated GIF, AVI)	허용
		폰트파일과 동영상파일의 혼합(TTF, SWF, MPEG, WMV, Animated GIF, AVI)	허용
		2D이미지파일, 폰트파일 및 동영상파일의 혼합(TIFF, JPEG, TTF, SWF, MPEG, WMV, Animated GIF, AVI)	허용

별지 제3호서식 앞쪽을 다음과 같이 한다.

디자인등록출원서

(앞쪽)

- 【출원 구분】 ☐ 디자인심사등록출원 ☐ 디자인일부심사등록출원
☐ 디자인심사등록분할출원 ☐ 디자인일부심사등록분할출원
☐ 정당한 권리자의 디자인심사등록출원
☐ 정당한 권리자의 디자인일부심사등록출원

(【참조번호】)

【출원인】

【성명(명칭)】

【특허고객번호】

【대리인】

【성명(명칭)】

【대리인번호】

(【포괄위임등록번호】)

(【원출원(무권리자 출원)의 출원번호(국제등록번호)】)

【단독디자인, 관련디자인 여부】

(【기본디자인의 표시】)

【출원번호(등록번호, 국제등록번호, 참조번호)】

(【디자인의 일련번호】)

【1디자인, 복수디자인 여부】

(【디자인의 수】)

【물품류】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

【화상디자인의 용도】

- ※ 화상디자인의 경우에만 000 조작용 또는 000 기능 발휘용 중 하나를 선택하여 기재
- ※ 물품의 부분의 화상디자인의 경우에는 기재하지 않음

【부분디자인 여부】

【창작자】

【성명】

【특허고객번호】

(【우선권 주장】

【출원국명】

【출원번호(국제등록번호)】

【출원일(국제등록일)】

【증명서류】 ☐ 첨부 ☐ 미첨부

【접근코드】)

(【그 밖의 사항】

☐ 디자인등록출원 공개신청

☐ 디자인비밀보장 청구

☐ 신규성 상실의 예외 주장

☐ 디자인이전희망

☐ 국가연구개발사업)

위와 같이 특허청장에게 제출합니다.

출원인(대리인)

(서명 또는 인)

【수수료】 (기재방법 제16호 참조)

【출원료】

개 디자인

원

(【수수료 자동납부번호】)

【첨부서류】 1. 도면(사진·견본) 1통 (복수디자인등록출원인 경우에는 각 디자인마다 1통을 말합니다)

2. 법령에서 정한 서류 각 1통 (기재방법 제18호 참조)

210mm×297mm(백상지 80g/m²)

별지 제3호서식 뒤쪽 기재방법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0. 【물품류】란

이 난에는 「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 별표 4(물품류 구분)에서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이 속하는 하나의 물품류를 선택하여 다음 예와 같이 적습니다.

[예] 【물품류】 제1류

화상디자인을 출원하는 경우에는 물품류에 14류를 기재하며, 물품의 부분의 화상디자인은 해당 물품류를 기재합니다.

별지 제3호서식 뒤쪽 기재방법 제11호의 다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호 다목을 라목으로 한다.

다. 화상디자인을 출원하는 경우에는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란에 다음의 예와 같이 화상의 구체적인 용도(~용 화상)를 기재하며, 용도를 기재하지 않고 화상디자인, 화상 등으로 기재해서는 안됩니다.

[예]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 정보통신용 화상, 수치입력용 화상, 차량정보표시용 화

상 등

라. 한 벌의 물품의 디자인은 「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 별표 5(한 벌의 물품의 구분)에 따라 적습니다.

별지 제3호서식 뒤쪽 기재방법 제18호의 차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차. 도면을 전자적 이미지파일 또는 3차원 모델링파일 형식으로 제출하거나 참고도면을 동영상파일 형식으로 제출할 경우에는 다음 표에 따른 파일 형식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1) 하나의 디자인 제출 시 파일 형식

디자인의 종류	출원 시 제출파일 형식		허용 여부
평면, 입체, 화상디자인, 물품의 부분의 화상디자인	도면	2D이미지파일 제출 (TIFF, JPEG)	허용
		3D모델링파일 제출 (3DS, DWG, DWF, IGES, 3DM)	허용
		동영상파일 제출 (SWF, MPEG, WMV, Animated GIF, AVI)	불가
		2D이미지파일과 3D모델링파일의 혼합 제출 (TIFF, JPEG, 3DS, DWG, DWF, IGES, 3DM)	허용
	참고도면	2D이미지파일 제출 (TIFF, JPEG)	허용
		3D모델링파일 제출 (3DS, DWG, DWF, IGES, 3DM)	허용
		동영상파일 제출 (SWF, MPEG, WMV, Animated GIF, AVI)	허용
		2D이미지파일과 3D모델링파일의 혼합 제출 (TIFF, JPEG, 3DS, DWG, DWF, IGES, 3DM)	허용
		2D이미지파일과 동영상파일의 혼합 제출 (TIFF, JPEG, SWF, MPEG, WMV, Animated GIF, AVI)	허용
		3D모델링파일과 동영상파일의 혼합 제출 (3DS, DWG, DWF, IGES, 3DM, SWF, MPEG, WMV, Animated GIF, AVI)	허용
		2D이미지파일, 3D모델링파일 및 동영상파일의 혼합 제출 (TIFF, JPEG, 3DS, DWG, DWF, IGES, 3DM, SWF, MPEG, WMV, Animated GIF, AVI)	허용
글자체디자인	도면	2D이미지파일 제출 (TIFF, JPEG)	허용
		폰트파일 제출 (TTF)	허용
		동영상파일 제출 (SWF, MPEG, WMV, Animated GIF, AVI)	불가
		2D이미지파일과 폰트파일의 혼합 제출 (TIFF, JPEG, TTF)	허용
	참고도면	2D이미지파일 제출 (TIFF, JPEG)	허용
		폰트파일 제출 (TTF)	허용
		동영상파일 제출 (SWF, MPEG, WMV, Animated GIF, AVI)	허용
		2D이미지파일과 폰트파일의 혼합 제출 (TIFF, JPEG, TTF)	허용
		2D이미지파일과 동영상파일의 혼합 제출 (TIFF, JPEG, SWF, MPEG, WMV, Animated GIF, AVI)	허용
		폰트파일과 동영상파일의 혼합 제출 (TTF, SWF, MPEG, WMV, Animated GIF, AVI)	허용
		2D이미지파일, 폰트파일 및 동영상파일의 혼합 제출 (TIFF, JPEG, TTF, SWF, MPEG, WMV, Animated GIF, AVI)	허용

(2) 복수디자인의 제출 시 파일 형식

※ 복수디자인을 하나의 출원서로 제출할 경우에는 다음 표에 따른 파일 형식을 사용해야 합니다.

디자인의 종류	M001의 제출파일 형식		M002의 제출파일 형식		허용 여부
평면, 입체, 화상디자인, 물품의 부분의 화상디자인	도면	2D이미지파일 제출 (TIFF, JPEG), 3D모델링파일 제출 (3DS, DWG, DWF, IGES, 3DM), 2D이미지파일과 3D모델링파일의 혼합 제출 (TIFF, JPEG, 3DS, DWG, DWF, IGES, 3DM)	⇒	2D이미지 파일(TIFF, JPEG)	허용
				3D모델링 파일(3DS, DWG, DWF, IGES, 3DM)	허용
				동영상파일(SWF, MPEG, WMV, Animated GIF, AVI)	불가
				2D이미지파일과 3D모델링파일의 혼합(TIFF, JPEG, 3DS, DWG, DWF, IGES, 3DM)	허용
	참고도면	2D이미지파일 제출 (TIFF, JPEG), 3D모델링파일 제출 (3DS, DWG, DWF, IGES, 3DM), 동영상파일 제출 (SWF, MPEG, WMV, Animated GIF, AVI), 2D이미지파일과 3D모델링파일의 혼합 제출 (TIFF, JPEG, 3DS, DWG, DWF, IGES, 3DM), 2D이미지파일과 동영상파일의 혼합 제출 (TIFF, JPEG, SWF, MPEG, WMV, Animated GIF, AVI), 3D모델링파일과 동영상파일의 혼합 제출 (3DS, DWG, DWF, IGES, 3DM, SWF, MPEG, WMV, Animated GIF, AVI)	⇒	2D이미지 파일(TIFF, JPEG)	허용
				3D모델링 파일(3DS, DWG, DWF, IGES, 3DM)	허용
				동영상파일(SWF, MPEG, WMV, Animated GIF, AVI)	허용
				2D이미지파일과 3D모델링파일의 혼합(TIFF, JPEG, 3DS, DWG, DWF, IGES, 3DM)	허용
				2D이미지파일과 동영상파일의 혼합(TIFF, JPEG, SWF, MPEG, WMV, Animated GIF, AVI)	허용
				3D모델링 파일과 동영상파일의 혼합(3DS, DWG, DWF, IGES, 3DM, SWF, MPEG, WMV, Animated GIF, AVI)	허용

		2D이미지 파일, 3D모델링 파일 및 동영상파일의 혼합 제출 (TIFF, JPEG, 3DS, DWG, DWF, IGES, 3DM, SWF, MPEG, WMV, Animated GIF, AVI)	DWG, DWF, IGES, 3DM, SWF, MPEG, WMV, Animated GIF, AVI)	
			2D이미지파일, 3D모델링파일 및 동영상파일의 혼합(TIFF, JPEG, 3DS, DWG, DWF, IGES, 3DM, SWF, MPEG, WMV, Animated GIF, AVI)	허용
글자체디자인	도면	2D이미지파일 제출 (TIFF, JPEG), 폰트파일 제출 (TTF), ⇒ 2D이미지파일과 폰트파일의 혼합제출 (TIFF, JPEG, TTF)	2D이미지파일(TIFF, JPEG)	허용
			폰트파일(TTF)	허용
			동영상파일(SWF, MPEG, WMV, Animated GIF, AVI)	불가
			2D이미지파일과 폰트파일의 혼합(TIFF, JPEG, TTF)	허용
	참고 도면	2D이미지파일 제출 (TIFF, JPEG), 폰트파일 제출 (TTF), 동영상파일 제출 (SWF, MPEG, WMV, Animated GIF, AVI), 2D이미지파일과 폰트파일의 혼합제출 (TIFF, JPEG, TTF), 2D이미지파일과 동영상파일의 혼합 제출 (TIFF, JPEG, SWF, MPEG, WMV, Animated GIF, AVI), 폰트파일과 동영상파일의 혼합 제출 (TTF, SWF, MPEG, WMV, Animated GIF, AVI), 2D이미지파일, 폰트파일 및 동영상파일의 혼합 제출 (TIFF, JPEG, TTF, SWF, MPEG, WMV, Animated GIF, AVI)	2D이미지파일(TIFF, JPEG)	허용
			폰트파일(TTF)	허용
			동영상파일(SWF, MPEG, WMV, Animated GIF, AVI)	허용
			⇒ 2D이미지파일과 폰트파일의 혼합(TIFF, JPEG, TTF)	허용
			2D이미지파일과 동영상파일의 혼합(TIFF, JPEG, SWF, MPEG, WMV, Animated GIF, AVI)	허용
			폰트파일과 동영상파일의 혼합(TTF, SWF, MPEG, WMV, Animated GIF, AVI)	허용
			2D이미지파일, 폰트파일 및 동영상파일의 혼합(TIFF, JPEG, TTF, SWF, MPEG, WMV, Animated GIF, AVI)	허용

별지 제4호서식 뒤쪽 기재요령 제1호마목5) 후단 중 “화상디자인”을 “화상디자인 및 물품의 부분의 화상디자인”으로 한다.

- 5) 디자인의 내용을 충분히 표현하기 위하여 여러 벌의 도면이 필요한 경우(움직이는 것, 열리는 것 등의 형태가 변화하는 디자인으로서 변화 전·후의 상태를 각각의 도면에 표현하려는 경우 등)에는 다음 예와 같이 각 도면의 식별 항목명에 영문자 대문자(A, B…순)를 적어서 구분하고, 【디자인의 설명】란에 통상적인 디자인의 설명을 먼저 한 후에, “변화 전 상태의 도면은 도면A 1.1부터 도면A 1.7까지이며, 변화 후 상태의 도면은 도면B 1.1부터 도면B 1.7까지”라고 설명하는 방식으로 그 구분 기준을 명시합니다. 이 경우 **화상디자인 및 물품의 부분의 화상디자인** 출원은 여러 벌의 도면이 필요한 경우라도 각 도면의 식별 항목명을 영문자 대문자로 구분하지 않고 4)의 방법으로 제출할 수 있다.

별지 제4호서식 뒤쪽 기재요령 제2호마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호 마목을 바목으로 한다.

마. 화상디자인의 도면

- 1) 화상디자인이 평면적인 경우에는 디자인등록을 받고자 하는 평면적인 화상을 나타내는 도면을 제출해야 하고, 입체적인 경우에는 등록을 받고자 하는 입체적인 화상을 나타내는 도면을 제출해야 합니다.
- 2) 화상디자인 전체가 아닌 부분에 대하여 디자인등록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전체에서 등록을 받고자 하는 부분의 위치, 크기, 범위 등을 명확하게 나타내야 하고, 등록을 받고자 하는 부분과 그 외의 부분의 경계가 명확해지도록 나타냅니다. 그 밖의 기재방법은 「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4호서식(디자인 도면)의 기재방법 제2호의 라목을 참고하여 작성합니다.
- 3) 변화하는 화상디자인의 경우에는 변화의 순서와 형태가 분명해야 하며, 형태의 관련성 및 변화의 일정성이 있어 구체적인 하나의 디자인의 내용으로 도출될 수 있어야 합니다.

바. 한 벌의 물품의 디자인의 도면

한 벌의 물품의 디자인을 도면에 도시하는 경우에는 각 구성물품마다 그 디자인을 충분히 표현할 수 있는 도면을 각각 순서대로 작성하고, 조합된 상태의 디자인을 충분히 표현할 수 있는 도면을 작성합니다. 또한 도면의 설명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디자인의 설명】란에 다음 예와 같이 적습니다.

[예] 도면A 1.1부터 도면A 1.7은 찻잔이고, 도면B 1.1부터 도면B 1.7까지는 받침접시이며, 도면C 1.1부터 도면C 1.7까지는 한 벌의 다기 세트임.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1년 10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개정 규정은 이 규칙 시행이후 최초로 디자인등록출원하는 것
부터 적용한다.